

## 재무·회계규정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4.11. 3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과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화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회계연도)** 대학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4조(회계구분)** 대학의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의 교비회계를 의미하며,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.

**제5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예산주관부서라 함은 예산을 편성, 관리,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.
2. 예산집행부서라 함은 예산청구부서를 말한다.

### 제2장 예산

**제6조(예산 총계주의 원칙)**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.

**제7조(예산편성지침)**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예산요구서)** ① 각 예산집행부서는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예산안의 편성)**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각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(별지서식 제1호)를 검토, 조정한 후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예산의 배정)** 예산주관부서장은 최종 확정된 예산을 각 집행부서별로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준예산)** ①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1. 교직원의 보수
2.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
3. 학교시설 유지 관리비
4.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
5. 긴급을 요하는 경비

②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**제12조(추가경정 예산)** ① 각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8조에 준하여 추경예산요구서(별지서식 제2호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주관부서장은 필요 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9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예산의 이월)**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주관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월할 수 있다.

1. 건물의 신·증·개축 공사 및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년 이상을 요할 경우
2.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목적사업으로서 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하고 차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우

**제14조(예비비)**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

③ 예비비의 사용은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15조(예산주관부서)** ① 예산주관부서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예산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2. 예산집행부서에서 지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3. 예산집행은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방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주관부서는 따로 정한다.

**제16조(예산집행의 내부통제)** 총장은 예산의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 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** 모든 지출은 자금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
**제18조(예산의 전용)** ①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관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.

다만,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.

② 예산주관부서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(별지 서식 제3호)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3장 회 계

### 제1절 수입과 지출

**제19조(수납의 원칙)** ①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처와 납부 마감일을 정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금 및 기타수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여 수납한다.

**제20조(수입의 귀속)**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한다.

② 당해연도 지출의 반납금은 그 지출된 과목으로 환입하며, 전년도 지출의 반납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한다.

**제21조(과오납의 반납)** 과오납된 수입금은 당해 수입과목에서 직접 반환한다.

**제22조(지출의 원칙)** ① 지출은 예산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와 기타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봉급, 임금 및 제수당
2. 보조금, 부담금 및 보상금
3.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
4. 경조금, 위문금, 사례금 및 시상금

③ 제2항의 기타 제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세금계산서, 계산서
2. 신용카드 매출전표
3. 현금영수증
4.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지로용지(전화요금 고지서 등)
5. 3만원(접대비의 경우 1만원)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

④ 제3항의 기타 제반 증빙서류 중 적격증빙서류를 수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래 상대방이 읍, 면 지역에 있는 간이 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

2.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
3. 금융,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
4.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
6.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

⑤ 지출 또는 지급은 정당한 수취권리가 있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지출방법)** ① 지출은 자금을 수령할 상대방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출납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.

**제24조(선급금 및 개산금)**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.

③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

1. 사례금
2.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
3.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
4.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

④ 개산금을 할 수 있는 경비

1. 여 비
2. 소송비용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
4. 부담금·보조금

**제25조(가지급금)** 가지급금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.

## 제2절 회계원칙

**제26조(회계원칙)**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진실되게 행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재무제표)**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·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.

**제28조(계정과목)** 대학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부 재정관리 지침을 준용한다.

### 제3절 자금계산서

**제29조(자금계산서의 원칙)**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자금계산의 방법)** 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,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4절 대차대조표

**제31조(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)**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)** ①대차대조표는 자산·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한다.

②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,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자산·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5절 운영계산서

**제33조(운영계산서의 원칙)**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운영계산서의 방법)**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

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·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

### 제6절 자산·부채의 평가

**제35조(자산의 평가기준)** ①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.

**제36조(대손상각등)**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
**제37조(투자유가증권의 평가)** ①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,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.

③ <삭제>

④ 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**제38조(감가상각)** 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다. 다만, 토지,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.

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.

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4에 따른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,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.

**제39조(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등)**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 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.

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.

## 제4장 결 산

**제40조(결산서의 작성)** ① 결산 담당 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재무제표
2.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
3.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
4. 결산부속서류

② 총장은 결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## 제5장 평 가

- 제41조(재정운영평가)**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과 결산주관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 시 당해 연도 예산, 회계, 결산의 재정운영 과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진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.
- ② 예산주관부서장과 결산주관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 확정 후 14일 이내에 재정운영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교무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교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운영평가를 실시한다.
1. 예산 대비 결산 내역
  2. 예산 초과 집행 여부
  3. 이월자금의 적정성
  4. 결산 항목 구성비의 적절성
  5. 재정 운영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
  6. 기타
- ④ 예산주관부서의 장과 결산주관부서의 장은 차년도 재정운영 시 재정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. 또한, 재정운영평가 결과 대비 개선 실적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예 산 요 구 서

부서명:

(단위: 원)

우선 순위	사업명	계정과목	산출근거	요구금액	비 고
합 계					

(별지서식 제2호)

## 추 경 예 산 요 구 서

부서명:

(단위: 원)

사업명칭	계정과목	당초예산액	지출(수입) 예산액	초과금액
순번	산출근거		금 액	
[증감사유]				
[예산확보계획]				
[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의 문제점]				

